4차산업 해외진출 펀드 사업 공고

한국수출입은행(이하 '수은')은 「4차산업 해외진출 펀드」사업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1. 사업추진 배경

□ 4차산업혁명 관련 신산업 분야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사업 및 해외공동투자, 수출촉진을 위한 사업 및 관련 외국기업 투자 등 해외사업의 성공적 진출 지원 목적

2. 선정개요

항목	세 부 내 용
수 은 투자약정 금 액	○ 250억원 이내 - 투자대상 실물자산의 수요, 운용사의 출자 요청 규모 및 정책금융 파급효과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
선 정 운용사수	○ 2개사 이내* - 제안금액 및 평가 순위에 따라 금액 결정 * 접수 후 심사결과에 따라 1개 운용사만 선정 가능(잔여 1개사 선정 시기는 금년 하반기로 연기할 수 있음)
투자기구	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(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)
운용사의 신청자격	○「투자기구」관련 법규에 따른 펀드 결성과 업무의 집행이 가능하며, - 공고일 현재 설립된지 3년이 경과한 법인 - 공고일 현재 운용중인 펀드 약정 총액 1천억원 이상인 법인
운 용 사 선정방법	○ 수은 홈페이지 공고 이후 제안서를 접수하여 수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선정 - 운용사, 운용인력, 펀드운용계획 등을 종합평가하여 선정
접수 마감일	2018년 2월 19일(월) (16시 限)
최종 선정일	2018년 3월 중
결성시한	○ 최종 선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

3. 투자분야

□ 투자대상 및 주목적 투자의무비율

항 목	내용
주목적 투자대상	○ 4차산업혁명 관련 신산업에 해당하는 사업*으로서, 「한국수출입은행법」제18조제1항에 따른 국내기업의 수출입, 해외투자, 해외사업 또는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해외진출에 해당하는 사업 *新성장 공동기준 품목(新성장정책금융센터, '16.12.30) 내에서 운용사가 제안 가능하며, 수은과 협의하여 결정(향후 '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'등 정부에서 지정하는 산업 분야로추가 가능)
주목적 투자의무비율	○ 수은 투자금액 이상

4. 주요 투자조건

항목	내용
최 소 결성금액	○ 수은 투자약정금액의 400% - 최소결성금액의 조정 : 펀드규모가 최소 결성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수은 투자약정금액 및 펀드 최소결성금액을 각각 75%까지 하향 조정 요청 가능
수은 투자약정비율	○ 약정총액의 25% 이내
운용사 투자약정비율	○ 개별 협의
우선손실충당	○ 최소 우선손실충당비율 없음 (단, 운용사 및 타기관의 우선손실충당 제안시 심사에 반영)
존속기간	○ 펀드 설립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펀드 투자전략에 맞게 조정
투자기간	○ 펀드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에서 펀드 투자전략에 맞게 조정

항목	내용
관리보수	○ 조기투자집행을 유도하는 구조로 설계하여 제안 ○ 보수율 : 개별협의
성과보수	○ 펀드 수익률이 기준수익율(IRR)을 초과하는 경우 성과보수 지급 * 기준수익율 및 성과보수 지급율 : 개별협의
납입방식	○ 수시납(Capital Call)
펀드결성 마감방식	○ 추가 증액방식(Multiple Closing) 등 협의 가능
투자자제한	○ 투자자는 기관투자자 및 법인으로 제한 단, 개인투자자(핵심운용인력 등)의 펀드 투자가 책임운용 강화에 효과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수은과 협의하여 결정
	○ 핵심운용인력 최소 3인 이상 참여
운용인력	○ 펀드 결성시 핵심운용인력은 규약(또는 정관)에 기재되어야 하며, 핵심운용인력 이탈방지 및 책임운용을 위한 조항에 합의해야 함
기타	 ○ 투자조건 중 위탁운용사 투자약정비율, 펀드 존속기간, 관리보수, 성과보수는 각각의 조건과 최종선정된 위탁운용사가 제안한 수준을 감안하여 개별협의를 통해 결정 ○ 본 공고문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 및 타 투자자가 펀드에 참여하기 위해 요청하는 사항 등은 수은과 개별협의를 통해 결정

5. 선정 배제·취소 및 제재 사항

□ 선정 배제

- 운용사가 현재 법령위반 또는 시정명령 미이행 상태에 있거나 기타 우회적인 방법 등으로 사실상 법령위반 상태에 있어 펀드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- 과거 5년 이내에 법령위반으로 관계 감독기관으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바 있거나, 시정명령 이행 실적이 양호하지 않은 경우
- 최근 2년내 자산건전성이 취약하거나 도덕적 해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운용사로서 펀드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- 펀드 운용과정에서 대주주 등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운용사의 독립
 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
- 투자업체 발굴 및 투자의사결정 과정에서 대주주 등 외부의 압력으로 운용사로서 독립적 의사결정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- 제안 펀드의 핵심운용인력, 대표펀드 매니저 또는 운용사 대표이사가 과거5년 이내에 감독당국으로부터 감봉 이상의 제재를 받은 경우
- 운용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·형사상 소송의 진행, 리스크 관리 및 컴플라이언스 등의 위험관리체계의 부재, 경영권 불안정, 운용 인력의 잦은 이동 등으로 펀드의 안정적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- 고의적 또는 중대한 오류 누락 등으로 중요한 제안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기재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

□ 선정 취소

- 운용사가 타 투자자의 투자확약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사실이 허위 또는 의도적인 조작으로 밝혀지는 경우
- 운용사 선정 후 결성총회까지 선정 배제 사유 또는 당해 펀드의 운용에
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

- 당행이 결정한 투자조건을 운용사가 수용하지 않아 정관 협의 등 후속 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
- ㅇ 결성시한 내 펀드조성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

□ 제재 사항

- 다음의 경우, 해당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간 운용사 앞 수은의 신규 투자를 제한
 - 선정 취소가 될 경우
 - 펀드 존속기간 중 해당 펀드의 정관이나 약관 또는 규약상 중대한 의무를 위배한 경우

6. 선정일정 및 지원방법

- □ 수은이 정하는 제출서류 및 그 내용을 포함한 USB메모리 1개를 지정 된 접수처에 접수기간 중 제출
 - ※ 제출서류 및 지원관련 양식은 개별문의
- □ 구술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운용사는 별도 PT자료(10부) 제출
 - 분량 : 본문 기준 20페이지 이내 (발표 당일 파워포인트 파일 별도 지참)
- □ 제안서 접수 마감일 : '18. 2. 19 (월)

7. 접수처 및 문의방법

- □ 접수처 : 한국수출입은행 투자금융실 (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8 한국수출입은행 7층)
- □ 문의방법 : 투자금융실 (02-6255-5105, 5107)
 - * E-mail: wookha@koreaexim.go.kr, bohye.kwon@koreaexim.go.kr

8. 기타

□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수출입은행 직원이 금품,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한국수출입은행 부조리신고센터(당행 홈페이지 > 열린 경영 > 윤리경영 > 신고센터)나 준법업무팀(☎02-3779-6494) 앞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